[JBLI이슈페이퍼2022-01]

전라북도 노동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행정 현황

강 문 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이슈페이퍼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JBLI이슈페이퍼 2022-01

전라북도 노동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행정 현황

작성 |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행일 | 2022년 1월 27일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
전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요 약

○ 전라북도 노동재해 현황

- 「산업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재해자 수는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했음(**전라북도 재해율 0.57%→0.7%, 전국 0.49%→0.58%**). **2017~2018년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은 전국 2위** 수준 기록.
- 전라북도와 전국의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2020년 이전까지 전북은 사고재해율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전국 대비 큰 폭으로 높음. 이는 **전북지역 재해율 집계에 상당한 재해은폐**가 있었음을 시사.

○ 업무상 사고재해 현황

- 2016년~2020년 **전북의 제조업·광업 재해율은 전국 재해율보다 0.04~0.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6년~2019년까지 전국의 제조업 · 광업 재해율은 0.55~0.58%로 일정한 반면 전북의 재해율은 0.59%에서 0.81%로 증가하여 차이가 확대.
- 전국과 전북 모두 5인 미만 규모의 작은 사업체에서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작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대책수립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
- 전북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100~299인 규모 사업체에서 재해율이 낮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재해율이 높아지는 U자형 곡선. 대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높은 이유를 향후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

○ 중대재해 현황

- 2018~2020년 전북지역에서 100건의 중대재해 발생함. 매달 2.8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음. 전북은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가 전체 중대재해 중 51.0%를 차지**함(전국 43.7%).
- 전라북도 **중대재해 중 떨어짐(추락) 재해는 49건(49.0%)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37건이 발생 75.5%를 차지**함(전국 떨어짐 중대재해 중 건설업 비중 60.3%).
- 전라북도 건설업에서의 안전보건 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특히 떨어짐 사고 예방 노력이 각별히 중요함을 시사함.

○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

- 전라북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2016년 318건에서 2020년 612건으로 92% 증가했음.
- 전북에서 의뢰된 업무상 질병 재해 사건은 광주질판위에서 판정이 이루어지며, 광주 질판위는 이외에도 전남, 광주에서 의뢰된 사건을 함께 심판하고 있음. 2016~2020년에 **광주질판위로 의뢰된 업무상 질병 재해 전체 사건의 인정률은 전북에서 의뢰된 사건의 인정률보다 7.6% 높았음**.
- **질병판정위원회가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따른 물리적 시간·거리상의 제약**, 전라북도 내 노동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 미흡** 등이 원인으로 추정됨.
-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재직자 비중은 전국 15.4%, 전북 21.9%, 50인 미만 사업체 재직자 비중은 전국 33.4%, 전북 40.4% 였음. 상대적으로 인정이 까다로운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전라북도 5인 미만 사업체 재직 노동자의 인정률이 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작은 사업장에 재직한 재해노동자일수록 조력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향후 정책수립의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고용노동부 지역지청의 안전보건감독 행정

-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의 **산업안전감독 실시 사업체 수는 2019년 1,240개→2020년 780개로 감소**하였음. 반면 전국에서 실시된 산업안전보건감독 사업체 수는 2019년 13,568개→2020년 19,290개로 대폭 증가함.
- 감독 실시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정기감독 현황을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 지청과 전국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전주지청이 실시한 안전보건 감독에서 적발한 위반율**은 2018년, 2020년 각각 43.1%, 21.1%로 전국의 위반율 90.2%, 50.6%에 비해 **크게 낮았음**. 군산·익산지청의 위반율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사**법처리율 역시 전주지청이 1.7%~8.0%인 반면 전국은 10.6%~18.1%로 큰 차이 보임**.

○ 지방정부 노동안전보건 행정

- 산업안전보건 법령 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16개 도·시·군 지자체 중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 고창군에서

안전 ·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외부기관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음. **익산시는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 수가 100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노 · 사 동수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자료를 조사한 2021년 3분기까지 **전라북도 · 익산시 · 김제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전라북도, 김제시는 `21년 12월 설치된 것으로 확인). 전주시는 2021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 개최하지 않았고, 진안군은 노사동수로 구성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였음.
- 전라북도 내 최대 기관인 전라북도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 15개 광역단체에 노동안전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북도는 2021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함. 전라북도 조례는 노동안전보건정책 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두었고, 노동안전보건정책협의 기구 설치,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운영, 지원조직 설립 등의 내용이 부재함.
- 전라북도에는 노동자 재해 진료 및 치료, 예방사업을 하는 전문기구가 미흡한 편임.

0. 들어가며

○ 개요

- 일터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한국에서 노동안전보건의 실태는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여 대단히 후진적임. 2018년 한국의 재해사망률은 OECD국가 중 터키, 멕시코, 미국에 이어 4번째로 높았음(통계청, 2021). 한국은 재해 은폐율도 높아 전체 산재 사건 중 2/3가 은폐되고 있음(김정우, 2017).
- 이와 같은 지표는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중 이선호 님 사망, 현장실습 중 잠수업무로 홍정운 님 사망, 전주 상수도관거 세척 작업 중 노동자 사망, 전주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구명줄 절단으로 노동자 사망, 2022년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로 노동자 6명 실종 · 사망 등 매년 반복되는 비극적인 중대재해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그러나 매 사고의 원인은 표면적 ·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진단되며 고용형태, 비대칭적 노동자 지위, 다단계 하도급, 사용자 면책 등 이면의 구조적 원인은 진단과 개선책의 예외로 남아있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작은 재해와 사소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은 중대재해의 예방에 있어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시행이 필요조건임을 의미함. 무엇보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이윤에 앞서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우리 사회에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공고하게 뿌리내렸는지 평가가 필요한 대목임.
-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재해율·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노동안전보건기관 및 정책의 미비로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임. 전라북도는 한국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노동자의 생명·건강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있음을 시사함. 시간당 임금, 고용률, 비정규직율,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등 노동권의 수준을 반영하는 각종 노동지표가 열악한 현실도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1988년 문송면의 죽음 이후 각계의 노력으로 노동자의 안전·건강권은 우리 사회의 기본 의제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음.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오랜기간 요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지방정부의 책무로도 수용하였으며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협의기구, 감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에 맞춰 여러 지표를 통해 전라북도 노동안전보건 실태를 진단해 보고자 함.

I. 전라북도 노동재해 일반 현황

○ 개요

- 본 절에서는 최근 5개년(2016~2020년) 각 연도별 전라북도 노동재해 현황을 관련 통계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였음.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하는 「산업재해통계분석」(2016~2020),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가 발간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2016~2020),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에서 취합하는 노동재해 현황(2016~2020),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2016~2020) 등임.
- 「산업재해통계분석」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에는 광역지자체의 규모별·업종별 현황이 공개되지 않음. 이에 전라북도와 전국의 노동재해 현황 비교는 「산업재해통계분석」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종합하여 작업하였음.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통계에는 재해자 기준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함.
- 차이는 대표적으로 ①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사고 재해로 접수된 건도 안전보건공단의 통계 분류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재분류된 사례에서 발생하는 차이, ②산재신청 및 요양기간의 시점 상의 차이, ③기타 분류 상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됨.

○ 전라북도 노동재해 현황(2016~2020)

- 「산업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재해자 수는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음. 재해율은 0.57에서 0.7로 23% 증가. 같은 기간 전국 재해율은 0.49에서 0.58로 18% 증가했음.
- 사망만인율도 매년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특히 2017~2018년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은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중대재해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와 전국의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2020년 이전까지 전북은 사고재해율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전국 대비 큰 폭으로 높음. 이는 전북지역 재해율 집계에 상당한 재해은폐가 있었음을 시사함.
- 2020년에 이르러 사고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비가 전국 평균과 비슷해졌으나 향후 지속적인 관찰 필요함.

<표-1> 연도별 노동재해 현황

(단위: 명, %, ‱ ; 출처 : 「산업재해통계분석」)

연도	전북							전국						
	노동자수	재해자 (재해율)	업무상 사고재해 (재해율)	업무상 질병요양 (만인율)	사망자 (만인율)	사고사망자 (만인율)	질병사망자 (만인율)	노동자수	재해자 (재해율)	업무상 사고재해 (재해율)	업무상 질병요양 (만인율)	사망자 (만인율)	사고사망자 (만인율)	질병사망자 (만인율)
2016	580,736	3,301	3,013	273	56	41	15	18,431,716	90,656	82,780	7,068	1,777	969	808
		0.57	0.52	4.7	0.96	0.71	0.26		0.49	0.45	3.83	0.96	0.53	0.44
2017	590,170	3,340	3,005	316	65	46	19	18,560,142	89,848	80,665	8,190	1,957	964	993
		0.57	0.51	5.35	1.1	0.78	0.32		0.48	0.43	4.41	1.05	0.52	0.54
2018	600,778	3,860	3,423	405	82	50	32	19,073,438	102,305	90,832	10,302	2,142	971	1,171
		064	0.57	6.74	1.36	0.83	0.53		0.54	0.48	5.40	1.12	0.51	0.61
2019	571,865	4,021	3,508	487	65	39	26	18,725,160	109,242	94,047	14,030	2,020	855	1,165
		0.7	0.61	8.52	1.14	0.68	0.45		0.58	0.5	7.49	1.08	0.46	0.62
2020	572,136	3,998	3,443	555	57	31	26	18,974,513	108,379	92,383	14,816	2,062	882	1,180
		0.7	0.6	9.7	1.0	0.54	0.45		0.57	0.49	7.81	1.09	0.46	0.62

<표-2> 업무상사고재해율과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비

(단위: %, ‱; 출처 : 「산업재해통계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연도	전북			전국		
	업무상 사고재해율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만인율비	업무상 사고재해율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만인율비
2016	0.52	0.71	1.37	0.45	0.53	1.37
2017	0.51	0.78	1.53	0.43	0.52	1.21
2018	0.57	0.83	1.46	0.48	0.51	1.01
2019	0.61	0.68	1.11	0.5	0.46	0.92
2020	0.6	0.54	0.9	0.49	0.46	0.94

❍ 업무상 사고재해 현황(2016~2020)

◯ 업종별 업무상 사고재해 현황

- 전국/전라북도 사고재해 업종별 구성비를 비교하면 전라북도는 제조업 · 광업의 비중이 전국 대비 낮고 건설업의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재해율을 분석하면 2016년~2020년 전북의 제조업·광업 재해율은 전국 재해율보다 0.04~0.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6년~2019년까지 전국의 제조업 · 광업 재해율은 0.55~0.58%로 일정한 반면 전북의 재해율은 0.59%에서 0.81%로 증가하여 차이가 확대되었음.

◯ 사업체 규모별 업무상 사고재해 현황

- 전국과 전북 모두 5인 미만 규모의 작은 사업체에서 업무상사고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작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대책수립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함.
- 반면 사업체 규모와 재해율의 관계에서 전국과 전북 사이에 다소 상이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음.
- 전국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반비례 곡선을 보이지만, 전북의 업무상사고 재해율은 100~299인 규모 사업체에서 재해율이 낮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재해율이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음. 전라북도의 1,000인 이상 사업체 재해자수가 2016년 110명(재해율 0.32)에서 2020년 267명(재해율 1.09)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특이함.
- 전라북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높은 이유를 향후 주의깊게 분석할 필요 있음.

<표-3> 업무상 사고 재해 업종별 구성비

(단위: 명,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연도	계		제조업·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기타의 사업[1]		기타[2]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16	82,780	3,020	28.2	25.1	31.0	34.2	0.1	0.2	4.5	3.2	1.7	4.7	33.2	29.3	1.2	3.2
2017	80,665	3,051	27.1	25.8	30.6	34.4	0.1	0.2	4.8	3.8	1.4	3.9	35.0	29.4	1.0	2.4
2018	90,832	3,610	25.5	24.1	29.2	33.8	0.1	0.1	5.3	3.7	1.1	3.2	37.8	32.4	1.1	2.8
2019	94,047	3,718	25.4	25.4	26.9	29.8	0.1	0.3	5.8	4.4	1.0	2.6	39.7	34.9	1.1	2.6
2020	92,383	3,678	25.2	24.8	26.6	30.0	0.1	0.1	7.0	4.7	1.1	2.0	39.0	36.3	1.0	2.1

1)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
2)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표-4> 업무상 사고 업종별 재해율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연도	구분	계		제조업·광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기타의 사업[3]		기타[4]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재해자수	82,780	3,020	23,316	759	25,701	1,034	94	5	3,765	96	1,400	143	27,510	886	994	97
2016	노동자수	18,431,716	580,736	4,247,806	127,655	3,152,859	127,274	72,940	4,738	836,471	22,293	93,493	6,064	9,180,379	254,123	847,768	38,589
	재해율	0.45	0.52	0.55	0.59	0.82	0.81	0.13	0.11	0.45	0.43	1.50	2.36	0.30	0.35	0.12	0.25
	재해자수	80,665	3,051	21,834	788	24,718	1,049	74	6	3,897	117	1,093	120	28,228	897	821	74
2017	노동자수	18,560,142	590,170	4,138,649	124,783	3,046,523	137,023	75,496	4,725	860,522	22,241	82,773	4,866	9,510,716	258,474	845,463	38,058
	재해율	0.43	0.52	0.53	0.63	0.81	0.77	0.10	0.13	0.45	0.53	1.32	2.47	0.30	0.35	0.10	0.19
	재해자수	90,832	3,610	23,153	871	26,486	1,220	96	4	4,777	132	1,018	115	34,339	1,168	963	100
2018	노동자수	19,073,438	600,778	4,163,755	120,128	2,943,742	139,183	76,967	4,879	873,232	22,729	89,751	4,119	10,058,930	270,630	867,061	39,110
	재해율	0.48	0.6	0.56	0.73	0.90	0.88	0.12	0.08	0.55	0.58	1.13	2.79	0.34	0.43	0.11	0.26
	재해자수	94,047	3,718	23,870	944	25,298	1,109	97	13	5,464	162	985	95	37,339	1,297	994	98
2019	노동자수	18,725,160	571,865	4,056,156	116,963	2,487,807	111,549	76,687	3,988	910,585	22,725	91,682	2,443	10,239,876	274,912	862,367	39,285
	재해율	0.50	0.65	0.59	0.81	1.02	0.99	0.13	0.33	0.60	0.71	1.07	3.89	0.37	0.47	0.12	0.25
	재해자수	92,383	3,678	23,268	912	24,617	1,105	87	5	6,504	174	1,004	72	36,008	1,334	895	76
2020	노동자수	18,974,513	572,136	4,023,205	116,911	2,284,916	91,757	79,034	4,030	936,449	22,722	101,404	3,045	10,683,419	295,256	866,086	38,415
	재해율	0.49	0.64	0.58	0.78	1.08	1.20	0.11	0.12	0.69	0.77	0.99	2.36	0.34	0.45	0.10	0.20

3)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
4)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

<표-5> 업무상 사고 규모별 산재 승인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청구)

연도	구분	계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기타[5]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16	재해자수	82,474	3,020	28,106	1,042	41,650	1,396	5,587	197	4,321	171	1,691	96	1,425	110		8
	노동자수	18,431,716	580,736	2,736,477	105,108	7,938,346	260,234	1,911,811	60,401	2,513,015	74,306	1,733,042	46,445	1,599,025	34,242		
	비율	0.45	0.52	1.03	0.99	0.52	0.54	0.29	0.33	0.17	0.23	0.10	0.21	0.09	0.32		
2017	재해자수	81,811	3,051	28,016	1,093	39,619	1,335	5365	199	4,404	194	1,913	109	1,348	117		4
	노동자수	18,560,142	590170	2,813,885	108,123	8,069,832	269,922	1,921,118	59,251	2,500,364	76,782	1,700,950	44,053	1,553,993	32,039		
	비율	0.48	0.52	1.0	1.01	0.49	0.49	0.28	0.34	0.18	0.25	0.11	0.25	0.09	0.37		
2018	재해자수	97,168	3,610	30,624	1,221	43,485	1,548	6185	270	5,857	244	2,781	154	1,900	172		1
	노동자수	19,073,438	600778	3,030,676	120,373	8,306,786	273,484	1,971,076	60,633	2,510,402	75,161	1,701,468	40,101	1,553,030	31,026		
	비율	0.48	0.6	1.01	1.01	0.52	0.57	0.31	0.45	0.23	0.32	0.16	0.38	0.12	0.55		
2019	재해자수	102,652	3,718	31,871	1,194	43,720	1,529	6550	264	6,442	274	3,180	204	2,284	252		1
	노동자수	18,725,160	571865	2,996,744	118,314	8,166,782	267,618	1,942,824	59,841	2,459,398	67,372	1,679,624	35,788	1,479,788	22,932		
	비율	0.50	0.65	1.06	1.01	0.54	0.57	0.34	0.44	0.26	0.41	0.19	0.57	0.15	1.10		
2020	재해자수	101,233	3,678	31,159	1,233	41,524	1,403	6679	247	6,715	266	3,880	262	2,426	267		0
	노동자수	18,974,513	572136	3,005,960	115,374	8,272,899	266,425	1,979,709	59,337	2,523,122	67,745	1,708,100	38,775	1,484,723	24,480		
	비율	0.49	0.64	1.04	1.07	0.50	0.53	0.34	0.42	0.27	0.39	0.23	0.68	0.16	1.09		

5) 규모 구분 없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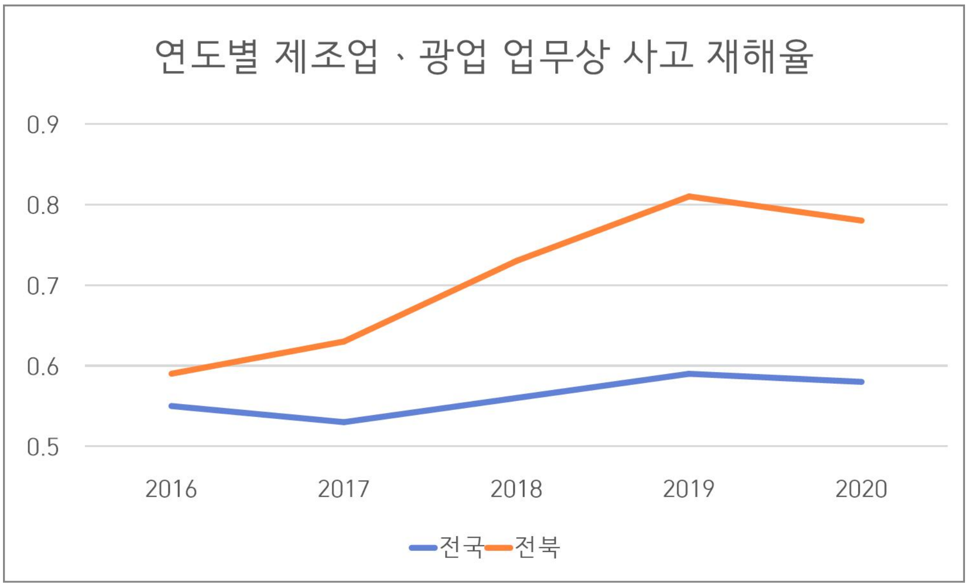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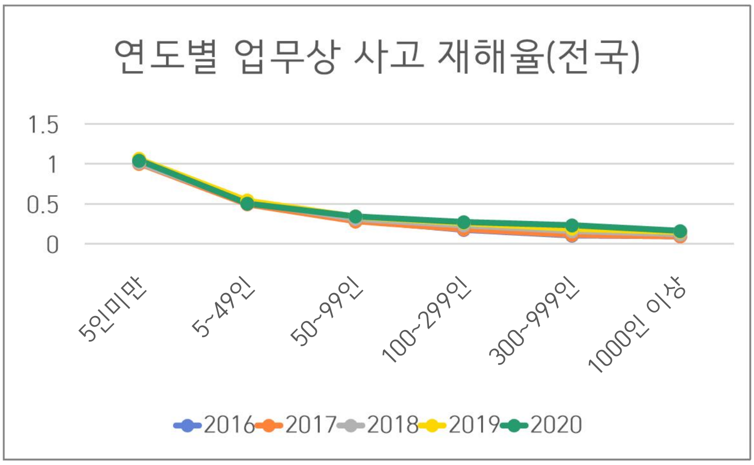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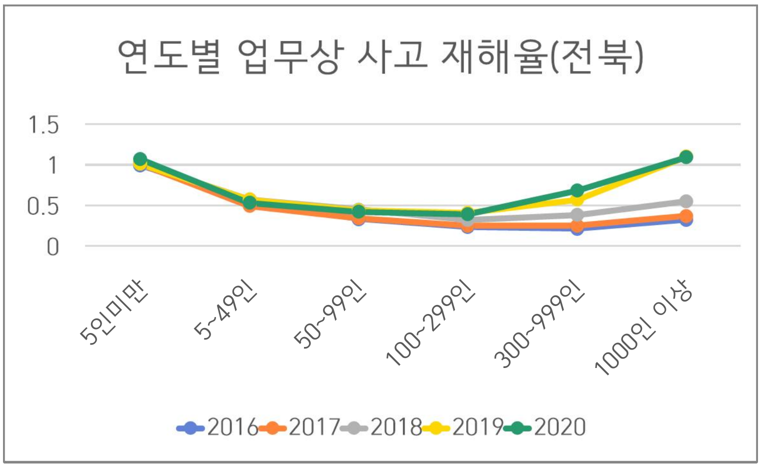

○ 업종별 · 유형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2018~2020)

- 업무상 사고 재해 중 중대재해 현황을 살피면,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6.3%, 2019년 42.3%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전북지역은

건설업 중대재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가 전체 중대재해 중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음(2018년 53.8%, 2020년 60%).

-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 사고가 2018년 43.6%, 2019년 52.8%, 2020년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 역시 전국 평균 2018년 43.7%, 2019년 39.9%에 비해 큰 폭의 차이를 보임. 2018년에는 전라북도 떨어짐 사망재해의 88.2%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건설업의 떨어짐 중대재해가 심각함.
- 전라북도 건설업에서의 안전보건 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특히 떨어짐 사고 예방 노력이 각별히 중요함을 시사함.

<표-6> 주요업종별, 주요유형별 중대재해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산업재해현황분석」,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정보공개청구)

연도	구 분	전국				전북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2018	계	801	371	192	238	39	21	11	7
			46.3	24.0	29.7		53.8	28.2	17.9
	떨어짐	350	213	37	100	17	15	1	1
			60.9	10.6	28.6		88.2	5.9	5.9
	끼임	102	24	63	15	6	0	6	0
			23.5	61.8	14.7		0.0	100.0	0.0
	기타	349	134	92	123	16	6	4	6
			38.4	26.4	35.2		37.5	25.0	37.5
2019	계	690	292	189	209	36	15	10	11
			42.3	27.4	30.3		41.7	27.8	30.6
	떨어짐	275	167	36	72	19	13	2	4
			60.7	13.1	26.2		68.4	10.5	21.1
	끼임	78	16	46	16	3	0	2	1
			20.5	59.0	20.5		0.0	66.7	33.3
	기타	337	109	107	121	13	2	6	6
			32.3	31.8	35.9		15.4	46.2	46.2
2020	계	733	308	190	235	25	15	5	5
			42.0	25.9	32.1		60.0	20.0	20.0
	떨어짐	235	139	41	55	13	9	2	2
			59.1	17.4	23.4		69.2	15.4	15.4
	끼임	73	9	50	14	1	1	0	0
			12.3	68.5	19.2		100.0	0.0	0.0
	기타	425	160	99	166	11	5	3	3
			37.6	23.3	39.1		45.5	27.3	27.3
3년 계	총계	2,224	971	571	682	100	51	26	23
			43.7	25.7	30.6		51.0	26.0	23.0
	떨어짐	860	519	114	227	49	37	5	7
			60.3	13.3	26.4		75.5	10.2	14.3
	끼임	253	49	159	45	10	1	8	1
			19.4	62.8	17.8		10	80	10
	기타	1111	403	298	410	40	13	13	15
			36.	26.8	36.9		32.5	32.5	37.5

○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2016~2020)

<표-7> 연도별 업무상 질병 인정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연도	전북			광주질판위			전체		
	신청	인정	인정률	신청	인정	인정률	신청	인정	인정률
2016	318	159	50.0	1,028	587	57.1	9,479	4,182	44.1
2017	389	215	55.3	1,035	577	55.7	8,715	4,607	52.9
2018	453	283	62.5	1,321	923	69.9	10,006	6,306	63.0
2019	594	382	64.3	1,857	1,403	75.6	14,206	9,173	64.6
2020	612	376	61.4	2,163	1,497	69.2	14,422	9,085	63.0
계	2,366	1,415	59.8	7,404	4,987	67.4	56,828	33,353	58.7

– 전라북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2016년 318건에서 2020년 612건으로 92% 증가했음.

– 전국 업무상 질병 신청 사건 대비 전북 사건 비중은 2018년 4.5%에서 2020년 4.2%로 소폭 감소함. 광주질판위 판정 건수 중 전북에서 의뢰된 사건의 비중은 2018년 34.3%에서 2020년 28.3%로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였음.

○ 업무상 질병 재해 인정률 현황

– 전라북도에서 의뢰된 업무상 질병 사건의 인정률은 2016년 50.0%에서 2020년 61.4%로 높아졌음.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업무상 질병 사건 인정률은 44.1%에서 63%로 상승함. 추이를 비교하면 2016년 전북 사건 인정률은 50.0%로 전국 인정률 44.1%보다 높았지만 2020년에는 전북 61.4%, 전국 63.0%로 거의 비슷해짐.

– 전북에서 의뢰된 업무상 질병 재해 사건은 광주질판위에서 판정이 이루어지며, 광주 질판위는 이외에도 전남, 광주에서 의뢰된 사건을 함께 심판하고 있음. 2016~2020년에 광주질판위로 의뢰된 업무상 질병 재해 전체 사건의 인정률은 전북에서 의뢰된 사건의 인정률보다 7.6% 높았음.

<표-8> 전북-광주질판위 간 업무상 질병 사건 인정률 차이

(단위: %P)

연도	(전북 - 광주) 인정률
2016	-7.1
2017	-0.4
2018	-7.4
2019	-11.3
2020	-7.8
2016~2020년 평균	-7.6

–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첫째, 질병판정위원회가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데 따른 물리적 시간 · 거리상의 제

약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업무상질판위 통계에 따르면, 재해자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한 경우 인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재해자는 거리 · 시간 · 건강 상의 제약으로 광주질판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자료제출과 같은 기초적인 업무에서도 거리상의 제약은 영향을 미치게 됨.

· 둘째, 전라북도 내 노동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기관이 거의 전무함. 원광대·동군산·대자인병원 등에 직업환경의학과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검진·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조력 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전주근로자건강센터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어 노동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함. 반면 광주·전남에는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에 직업환경의학과 수련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각 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문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

· 셋째, 전라북도 노동단체의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개입 부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2020년 말 기준, 광주질판위의 노동자단체 추천 질판위원 19명 중 민주노총전북본부 추천 질판위원은 2명에 불과함.

○ 질병종류별 업무상 질병 재해 산재 신청 및 인정 현황(2016~2020)

- 2016~2020년 전라북도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의 인정률은 29.9%로 전국 인정률 36.0% 대비 6.1%p 낮았음. 특히 2020년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 인정률은 전라북도 24.4%, 전국 38.2%로 그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음.
- 같은 기간 전북에서 정신질병 재해의 인정률도 58.1%로 전국 64.2%에 비해 6.1% 낮았음.
- 반면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암 인정률은 전국 인정률 대비 높은 편임.
- 전북에서 발생한 전체 업무상 질병 재해 중 기타 질병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지점임(2020 기준 전국 6.6%, 전북 21.9%).

<표-9> 연도별·질병종류별 업무상 질병별 재해 산재 신청 및 인정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연도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직업성암				정신질병				기타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신청	인정률
2016	66	15.2	1,911	22.0	176	64.8	5,345	54.0	7	85.7	228	58.8	5	20.0	169	41.4	64	43.8	1,826	36.8
2017	54	29.6	1,809	32.6	179	60.3	5,201	61.5	8	62.5	303	62.7	8	50.0	186	55.9	140	58.6	1,216	43.2
2018	75	41.3	2,241	41.3	212	72.2	6,375	70.0	9	88.9	302	72.8	8	75.0	226	73.5	149	57.0	862	61.9
2019	84	36.9	3,077	41.1	336	81.0	9,524	71.9	9	88.9	386	74.1	12	91.7	325	69.2	153	39.2	894	61.9
2020	86	24.4	2,429	38.2	366	73.5	10,000	68.3	16	75.0	477	70.2	10	30.0	558	67.2	134	53.0	958	64.6
계	365	29.9	11,467	36.0	1,269	72.2	36,445	66.4	49	79.6	1,696	68.7	43	58.1	1,464	64.2	640	50.9	5,756	50.4

<표-10> 전북-전국 간 주요 질병 재해 인정률 차이

(단위: %P)

연도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직업성암	정신질병
2016	-6.8	10.8	26.9	-21.4
2017	-3	-1.2	-0.2	-5.9
2018	0	2.2	16.1	1.5
2019	-4.2	9.1	14.8	22.5
2020	-13.8	5.2	4.8	-37.2
5년 평균	-6.1	5.8	10.9	-6.1

○ 규모별 업무상 질병재해 현황

- 전북의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자 현황을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하면 작은 사업장(30인 미만) 구성비가 전국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한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재직자 비중은 전국 15.4%, 전북 21.9%, 50인 미만 사업체 재직자 비중은 전국 33.4%, 전북 40.4%였음.
- 여기에는 사업체 규모가 영세한 전라북도 경제산업 구조의 특성이 반영되

<표-11> 5인 미만 사업장 연도별·주요 질병별 업무상 질병재해 산재 인정률

(단위: %, %p)

연도	질병	전북	전국	차이
2016	뇌심	11.8	26.1	-14.3
	근골	59.4	49.7	9.7
2017	뇌심	36.4	27.3	9.1
	근골	71.1	51.1	20
2018	뇌심	13.3	40.7	-27.4
	근골	74.3	66.2	8.1
2019	뇌심	58.8	44.2	14.6
	근골	70.3	66.7	3.6
2020	뇌심	40.0	39.7	0.3
	근골	67.6	67.9	-0.3
계	뇌심	32.5	36.0	-3.5
	근골	68.8	66.4	2.4

어 있음.

- 업무상 질병 재해는 그 승인절차 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해자가 조력자 없이 절차를 준비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음.
- 상대적으로 인정이 까다로운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전라북도 5인 미만 사업체 재직 노동자의 인정률이 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작은 사업장에 재직한 재해노동자일수록 조력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향후 정책수립의 참고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업종별 업무상 질병재해 현황

- 업종별 업무상 질병재해 인정 현황을 비교하면 제조업 · 광업에서 전북의 인정률이 광주 질판위 전체 인정률을 하회하고 타 업종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 차이는 8~19.8%p에 이름.
- 이는 앞서 전북 사건 인정률과 광주질판위 사건 인정률의 차이가 제조업 · 광업 업종의 질병 재해 인정률에서 비롯함을 의미함.

<표-12> 사업체 규모별 업무상 질병재해 산재 신청 구성비·인정률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연도	구분	계	5인 미만		5~30인 미만		30~50인 미만		5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인 이상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2016	전국	9,479	15.4	43.8	26.7	43.6	8.9	43.7	9.5	40.8	11.4	44.2	5.7	40.9	22.3	47.3
	전북	318	24.5	47.4	36.2	47.0	9.1	62.1	6.3	70.0	8.5	22.2	2.5	50.0	12.9	63.4
2017	전국	8,715	16.4	48.4	27.1	53.9	8.5	52.0	8.4	49.0	11.7	53.1	4	54.5	23.9	56.0
	전북	389	26.2	56.9	36.5	58.5	7.2	32.1	8.5	57.6	8.7	58.8	2.8	54.5	10.0	51.3
2018	전국	10,006	15.4	57.7	27.4	58.6	7.9	65.3	8.8	61.8	12.1	63.5	5	65.4	23.4	70.8
	전북	453	23.4	60.4	34.9	58.9	7.1	62.5	11.3	82.4	9.5	58.1	2.4	63.6	11.0	62.0
2019	전국	14,206	16.1	60.4	26.6	64.0	7.8	63.9	8.7	62.2	11.7	64.1	5.2	67.8	23.8	68.7
	전북	594	24.7	55.1	29.8	67.2	7.4	68.2	6.6	69.2	9.3	56.4	2.7	68.8	19.5	71.6
2020	전국	14,422	15.4	59.2	26.1	61.1	7.7	62.3	9	61.8	11.5	63.4	4.5	61.8	25.9	67.8
	전북	612	21.9	60.4	32.8	63.7	7.5	47.8	7.8	58.3	11.6	66.2	3.9	58.3	14.4	63.6

<표-13> 업종별 업무상 질병 재해 산재 신청 구성비·인정률 현황 (단위: 명, % ; 출처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정보공개」)

연도	구분	계	제조업·광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기타의 사업		기타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구성비	인정률
2016	전국	9,479	51.6	48.6	8.8	53.9	0.2	40.0	6.2	32.4	0.5	57.8	31.7	36.3	1.0	40.7
	광주	1,028	48.1	64.3	12.2	65.6	0.1	0.0	5.6	39.7	1.4	78.6	30.4	44.4	2.3	60.8
	전북	318	47.5	56.3	12.3	64.1	0.3	0.0	5.7	38.9	1.6	60.0	29.9	35.8	2.8	55.6
2017	전국	8,715	50.9	58.1	9.8	60.8	0.3	39.1	5.4	42.2	0.4	63.9	31.8	43.9	1.3	48.2
	광주	1,035	43.7	62.4	13.1	72.1	0.3	33.3	6.2	45.3	0.9	55.6	34	42.9	1.9	57.9
	전북	389	59.1	57.8	9.3	77.8	0.5	50.0	4.6	38.9	0.0	0.0	24.4	44.2	2.1	50.0
2018	전국	10,006	48.1	69.6	10.5	69.4	0.2	57.9	6.4	53.7	0.2	60.9	33.4	53.4	1.1	63.2
	광주	1,321	42.4	78.2	15.9	77.6	0.2	50.0	8.0	54.7	0.4	40.0	31.6	59.1	1.6	71.9
	전북	453	55.4	62.9	11.0	70.0	0.2	0.0	8.4	55.3	0.9	100.0	20.5	67.7	0.7	66.7
2019	전국	14,206	42.5	71.3	13.1	70.5	0.1	50.0	6.3	56.3	0.3	59.5	36.8	56.7	0.9	43.8
	광주	1,857	42.7	83.5	16.3	82.5	0.2	66.7	5.4	67.0	0.4	75.0	33.5	64.7	1.5	48.0
	전북	594	49.7	63.7	17.0	72.3	0.2	100.0	3.0	61.1	0.3	50.0	28.3	62.5	1.5	33.3
2020	전국	14,422	42.0	68.5	14.0	72.9	0.2	68.0	6.6	53.9	0.1	81.0	36.1	54.5	0.9	54.4
	광주	2,163	42.5	74.3	18.8	81.3	0.2	75.0	4.8	42.3	0.1	50.0	32.5	59.8	1.1	59.6
	전북	612	41.0	65.3	21.1	73.6	0.3	50.0	4.9	50.0	0.2	100.0	30.7	51.1	1.8	36.4

<표-14> 제조업·광업 업무상 질병재해 인정률과 지역별 차이

(단위: %P)

연도	전북	전국	광주	전북-광주 차이
2016	56.3	48.6	64.3	-8
2017	57.8	58.1	62.4	-4.6
2018	62.9	69.6	78.2	-15.3
2019	63.7	71.3	83.5	-19.8
2020	65.3	68.5	74.3	-9

II. 노동안전보건 행정

❍ 개요

- 본 절에서는 중앙노동관서와 지방정부의 노동안전보건 행정 수행 현황을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수행한 산업안전보건감동 현황과 전라북도 ·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시 · 군의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14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합 하였음.

❍ 고용노동부 지역지청의 안전보건감독 행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현황(2018~2020)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하는 감독을 시행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정기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누어짐.
- 정기감독은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임.
- 기획감독은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재해발성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감독이고,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함.

<표-15> 연도별·지청별 안전보건감독 현황

(단위: 개소, 건 ; 출처 :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정보공개청구)

구분	구분		실시 사업장	위반 사업장	처리 내역								
					행정처리								사법처리
					시정명령		사용중지		작업중지		과태료		
					개소	건수	개소	건수	부분	전면	개소	건수	
2018	전북 계		977	588	471	1411	32	35	35	3	441	957	192
	전주지청	소계	567	229	237	695	6	7	27	1	162	347	71
		정기감독	58	25	26	141	1	2	0	1	23	77	1
		기획감독	261	172	178	492	3	3	27	0	128	257	70
		기타점검	248	32	33	62	2	2	0	0	11	13	0
	군산지청	소계	266	215	145	443	24	26	5	0	170	352	53
		정기감독	16	14	13	74	0	0	0	0	14	40	5
		수시감독	5	4	4	5	0	0	0	0	4	5	0
		기획감독	153	134	117	349	2	2	4	0	95	200	48
		기타점검	92	66	11	15	22	24	1	0	57	107	0
	익산지청	소계	144	144	89	273	2	2	3	2	109	258	68
		정기감독	28	28	19	56	1	1	-	-	25	77	11
		기획감독	106	106	70	217	1	1	3	2	74	170	57
		기타점검	10	10	-	-	-	-	-	-	10	11	-
2019	전북 계		1240	563	445	1574	39	41	9	1	279	589	215
	전주지청	소계	392	189	221	659	1	1	3	0	93	186	84
		정기감독	25	23	27	164	0	0	0	0	22	48	2
		기획감독	303	138	163	428	0	0	3	0	63	128	82
		기타점검	64	28	31	67	1	1	0	0	8	10	0
	군산지청	소계	422	241	163	645	5	5	4	1	135	297	79
		정기감독	11	11	10	155	0	0	1	0	10	56	2
		기획감독	207	150	123	394	0	0	3	1	71	137	77
		기타점검	204	80	30	96	5	5	0	0	54	104	0
	익산지청	소계	426	133	61	270	33	35	2	-	51	106	52
		정기감독	10	10	7	65	-	-	-	-	9	23	6
		기획감독	159	68	54	205	-	-	1	-	31	64	46
		기타점검	257	55	-	-	33	35	1	-	11	19	-
2020	전북 계		780	321	275	847	32	32	5	1	86	221	163
	전주지청	소계	304	78	77	228	1	1	0	0	8	15	14
		정기감독	247	52	52	117	1	1	0	0	2	2	14
		수시감독	21	9	8	60	0	0	0	0	6	13	0
		기타점검	36	17	17	51	0	0	0	0	0	0	0
	군산지청	소계	205	109	89	376	3	3	0	0	53	164	32
		정기감독	150	67	64	193	3	3	0	0	20	29	30
		수시감독	15	10	10	89	0	0	0	0	9	27	2
		기획감독	1	0	0	0	0	0	0	0	0	0	0
		기타점검	39	32	15	94	0	0	0	0	24	108	0
	익산지청	소계	271	134	109	243	28	28	5	1	25	42	117
		정기감독	188	80	95	202	0	0	0	0	14	19	77
		수시감독	37	12	9	33	1	1	4	0	3	15	47
		기타점검	46	42	5	8	27	27	1	1	8	8	0

<표-16> 전국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현황

(단위 : 개, 참여연대(2021)에서 재인용하여 가공)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사법처리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2,884
	특별감독	18	18	18	17
	계	11,639	8,624	7,559	3,12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4,032
	특별감독	19	19	19	16
	계	13,568	8,648	7,902	4,227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297
	특별감독	26	26	26	24
	계	19,290	9,731	8,637	1,953

- 2018년~2020년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과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실시 현황은 <표-15>, <표-16>과 같음.
- 감독 실시 사업체 수는 2018년 977개, 2019년 1240개에서 2020년 780개로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업장 감독의 축소로 인한 것임.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에서 실시된 산업안전보건감독 사업체 수는 2018년 11,639개, 2019년 13,568개, 2020년 19,290개로 매년 대폭 증가했음. 이에 따라 전체 안전보건 감독 실시 업체 수 중 전북 업체의 비중은 2018년 8.4%, 2019년 7.6%에서 2020년 4.0%로 급감했음.
- 세 지청의 감독 업체수를 비교하면 2018년에는 전주지청이 567개로 가장 많았으나 2019년에는 39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같은 편차는 기획감독, 수시감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감독이 각 지청의 자율적 기준 및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정기감독 현황(2018~2020)

- 감독의 실시 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정기감독 현황을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과 전국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이미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사업체의 위반율은 2018년 65.7%, 2019년 95.7%로 대단히 높았음. 2020년 들어 전국과 전북 모두 정기감독 업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매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기감독 분류가 2019년까지는 중대재해, 사고성 중상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감독으로 국한되었다가 2020년부터 끼임, 추락, 동계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감독

으로 기준이 넓어졌기 때문임.

- 전주지청이 실시한 안전보건 감독에서 적발한 위반율은 2018년, 2020년 각각 43.1%, 21.1%로 전국의 위반율 90.2%, 50.6%에 비해 크게 낮았음. 군산 · 익산지청의 위반율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사법처리율 역시 전주지청이 전국, 군산 · 익산지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2020년 전국의 사법치리율은 10.6%~18.1%였으나 전주지청의 사법처리율은 1.7%~8.0%에 불과했음.
- 이와 같은 차이가 비롯된 이유에는 사업체 특성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감독이 부실하였을 가능성 등이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통계가 없어 이유를 특정할 수 없음.

<표-17> 고용노동부 전국·전북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감독 현황

(단위 : 개, %, 출처 :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2021))

연도	지청	점검업체수	위반율 (위반업체수/점검업체수)	시정지시율 (시정지시업체수/위반업체수)	사법처리율 (사법처리업체수/위반업체수)
2018	전국	1,252	90.2	74.0	18.1
	전북 계	102	65.7	56.9	16.7
	전주	58	43.1	44.8	1.7
	군산	16	87.5	81.3	31.3
	익산	28	100.0	67.9	39.3
2019	전국	1,025	95.1	86.0	17.5
	전북 계	46	95.7	95.7	21.7
	전주	25	92.0	108.0	8.0
	군산	11	100.0	90.9	18.2
	익산	10	100.0	70.0	60.0
2020	전국	15,387	50.6	46.0	10.6
	전북 계	585	34.0	36.1	20.7
	전주	247	21.1	21.1	5.7
	군산	150	44.7	42.7	20.0
	익산	188	42.6	50.5	41.0

-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안전보건 감독 현황에서 지청별, 연도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이 확인됨.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사무를 중앙정부 사무로 규정해온 법 · 제도 · 행정적 관행과 배치되는 결과임.
- 또한 규모, 업종, 위반 현황과 같은 세부항목이 집계되지 않는 감독 현황 통계로는 시사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참여연대(2021) 역시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지방정부 노동안전보건 행정

◯ 노동안전보건 정책포괄 대상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 중등 ·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산업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전라북도 소재 모든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정책 시행 대상으로 공무직을 포함하고 있음. 이외 공무원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지자체는 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무주군·군산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등 16개 광역 · 기초지자체 중 총 7곳으로 확인되었음. 기간제 노동자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는 지자체는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으로 총 12곳이었음.

–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자체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는 안전보건 정책 시행 대상임. 기간제 노동자를 정책 포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은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표-18>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시·군의 산업안전보건법 포괄 대상 현황

(출처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연도	담당부서	정책포괄대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기타
전라북도	총무과		o	o	o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o	o	o	
전주시	총무과	o	o	o	
익산시	행정지원과		o	o	
군산시	행정지원과	o	o	o	
남원시	행정지원과		o		
김제시	자치행정과		o	o	
정읍시	총무과		o	o	o
완주군	행정지원과		o		
임실군	행정지원과		o		
순창군	행정과	o	o	o	
고창군	울력행정과	o	o	o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o	o	o	
무주군	자치행정과	o	o	o	
진안군	행정지원과		o	o	
장수군	행정지원과, 보건사업과		o	o	o

○ 지방정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 산업안전보건 법령 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16개 도·시·군 지자체 중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 고창군에서 안전 ·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외부기관에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음. 익산시는 안전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안전 · 보건관리 업무 위탁은 사용자의 안전 · 보건관리 책임을 외주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상시노동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 ·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도록 바뀌었음. 전라북도 내 지자체들도 조속한 변화가 필요함.

〈표-19〉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시·군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출처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연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라북도		1명	1명
전라북도교육청		2명	1명
전주시		1명	1명
익산시		-	-
군산시		(위탁)호남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남원시		(위탁)한국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김제시		(위탁)호남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정읍시		(위탁)안전관리기술원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완주군		(위탁)안전관리기술원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임실군		(위탁)대한산업안전본부	(위탁)대자인병원
순창군		(위탁)대한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고창군		행정서기(임기제) (위탁)대한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부안군		(위탁)대한산업안전본부	(위탁)대자인병원
무주군		(위탁)대한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진안군		(위탁)호남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장수군	본청, 사업소	(위탁)대한산업안전본부	(위탁)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의료원	(위탁)호남산업안전본부	1명

○ 지방정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노동자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노동자 수가 100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표-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제1항·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전북도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고창군으로 2015년에 설치했음. 2019년 이전에 설치가 완료된 곳은 5곳이고 나머지 10곳은 2020~2021년에 설치하였음.

– 자료를 조사한 2021년 3분기까지 전라북도·익산시·김제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전라북도, 김제시는 `21년 12월 설치된 것으로 확인)

〈표-21〉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시·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2021년 12월 기준)

(출처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설치년도	미설치	2021년	2020년	2019년 이전	계
지자체 개수	1 (익산시)	5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순창군, 부안군, 김제시)	5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5 (남원시,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지만 전주시는 2021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 개최하지 않았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시행의 필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행 의지의 미흡 때문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진안군은 사용자 측을 다수로 구성하여 법령을 위반했음.

– 전라북도 내 최대 기관인 전라북도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은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표 22 2021년 1~3분기 전라북도·교육청 및 14개 시·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현황(2021년 10월 31일 기준)

(출처 : 각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연도	설치일자	구성비			회의 개최일	회의 주요 내용
		노	사	계		
전라북도	2021.12.					**3분기 현재 미설치**
전라북도교육청	2021.4.21.	10	10	20	2021. 6.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전라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1. 9. 30.	현업업무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호구 지급
전주시	2020.7.23.	7	7	14	2021. 1. 26.	작업환경 측정, 현장점검
						2분기 이후 코로나19집합명령에 의거 연기
익산시	미설치					**3분기 현재 미설치**
군산시	2020.4.1.	7	7	14	2021. 3. 30.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설치요청, 탈의실 및 샤워시설 설치(미수용)
					2021. 6. 25.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현장직 인원충원,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실시
					2021. 9. 29.	파상풍 예방접종 실시, 교환실 휴게시간 부여(장기검토), 샤워실 및 여성 화장실 설치
남원시	2019.2.27.	4	4	8	2021.3.31.~4.1.	현장작업자 응급치료비 지원 등
					2021.6.30.~7.2.	파상풍 주사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 등
					2021.9.30.~10.7.	회의결과 이행사항 확인 등
김제시	2021.12.					**3분기 현재 미설치**
정읍시	2019.03.26.	8	8	16	2021.3.3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논의
					2021.6.30	여름철 고온작업환경 안전대책
					2021.9.30	장마철·집중호우 시 재해예방
					2021.10.8	2021년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실시
완주군	2020.09.25.	5	3(2)	10	21.03.30.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공무직원 안전관리 교육 진행 요구 (코로나19 상황 주시 후 추후 재논의)
					21.06.28.	1분기 안전·보건 관리 현황 보고
					21.09.03.	2분기 안전·보건 관리 현황 보고
임실군	2020.12.15.	5	5	10	2021.3.12.	안전교육, 산업안전예방계획 수립 등
					2021.6.30.	산업안전보건 점검결과 및 개선결과 등
					2021.9.17.	산업안전보건 점검결과 및 개선결과 등
순창군	2021.3.30.	5	5	10	2021.3.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산업안전보건규정 제정 관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사항 MSDS 관리 철저
					2021.6.29	관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사항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근로자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 안전관리 근로자 보호구 확인 및 착용 관련 사항 여름철 장마 및 태풍 대비 사업장 및 근로자 안전점검
					2021.9.28	관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 → 2021년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完 근로자 질병 예방 대비 파상풍 등 예방 접종 시행 사업장 비상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개선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고창군	2015.	6	6	12	2021.03.31.	산업안전보건 법령 변경 사항 논의
					2021.06.30.	작업환경측정 및 기타 의견 논의
					2021.09.29	건강검진 및 기타 의견 토의
부안군	2021.4.14.	5	5	10	2021.4.27.	공동위원장 선출, 사업장 안전점검 시 노조집행부 참석, 산업안전보건 추진상황 보고
					2021.9.28.	산업안전보건 추진상황 보고(근골계유해인조사 결과, 안전 및 보건 점검결과 보고 등)

연도	설치일자	구성비			회의 개최일	회의 주요 내용
		노	사	계		
무주군	2020.8.	6	6	12	2021.03.25.	현업근로자 건강검진 추진 결과 보고,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쓰레기 선별장 점검 결과 보고
					2021.06.24.	21년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
					2021.10.01.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점검 결과 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및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진안군	2019.3.4.	4	5	9	2021.04.07.	재활용품 수거차량 리트프 장착 외 1건
					2021.07.21.	근로자상해예방대책 논의(안전.보건 관련 점검내용 논의
					2021.10.08.	군청 외 산업안전보건 점검사항 보고 및 개선방안 논의
장수군	2019.7.31.	5	5	10	2021.03.25.	2020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이행 점검 등
					2021.06.30.	환경미화원 종량제 봉투 위주 작업 심의 등
					2021.09.29.	산업안전지도관리 문제점과 대책방안 심의 등

○ 조례 및 제도화

- 노동자 안전보건 의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그 정책 수행이 지방정부의 책무로 점차 인식되고 있음.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제도화는 조례, 전문기관·조사관 운영, 협의기구 설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 일반적으로 제도화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조례 제정 여부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 지방정부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24>와 같음.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두고 있음. 13개 광역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활발했던 2020년~2021년에 노동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제정에 사회여론이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전라북도는 2021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음.
- 전국 광역단체의 노동안전보건조례는 대개 예방계획 수립, 노동단체 협의기구 설치, 사업체 안전보건 조사 조직 운영, 지원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 조례가 제정된 15개 지자체 모두 노동안전보건 정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중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충북 5개 단체임. 11개 지자체는 계획 수립을 강행규정으로 정했고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임의 규정으로 두었음.
- 노동단체가 참여하여 노동안전보건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를 제외한 12개 지자체의 조례에서 설치하도록 정하였음.
- 조례의 대상 사업체를 노동안전보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내용의 제도는 서울, 부산, 울산, 광주, 경기, 충북, 충남 7곳 지방정부의 조례에 담겼음.
-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조직의 설치가 조례에 담긴 지방정부는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6곳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강원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노동안전보건 조례에서 지방정부의 책무를 최소로 부과하고 있음이 확인됨. 조례가 시행되어도 전북 도청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식적 조례임.
-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책무를 세밀하게 부과하도록 전면적 조례 개정이 필요함. 동시에 노동단체와의 노동안전보건정책협의회 운영,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도입 등 선행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도모해야할 것임.

〈표-23〉 전국 17개 사도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 현황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연도	조례명	제정일	안전보건계획 수립			노동단체 협의기구	사업체 조사 감독	지원조직
			유무	장기계획 여부(주기)	강행규정 여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02.19.**	**O**	**X**	**X**	**X**	**X**	**X**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01.09.	O	3년	O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안전조사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X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2020.05.27.	O	5년	O	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노동안전보건센터
대구광역시	-	-	-	-	-	-	-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2021.04.09.	O	5년	O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X	노동안전보건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2021.10.01.	O	X	O	산업재해예방위원회	X	X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2.29.	O	5년	O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안전조사관	X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09.28.	O	X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지킴이단	산업안전보건센터
세종특별시	-	-	-	-	-	-	-	-
경기도	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경기도노동자건강증진조례	2018.03.20. 2019.04.29.	O	X	O	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	노동안전지킴이	건강증진센터
강원도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07.02.	O	X	X	X	X	X
충청북도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08.06.	O	4년	O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노동안전조사관, 노동안전지킴이단	X
충청남도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0.05.	O	X	X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산업안전지킴이단	노동안전보건센터
전라남도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05.21.	O	X	O	X	X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경상북도	경상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12.30.	O	X	O	노동안전보건위원회	X	X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9.10.18.	O	X	X	산업재해예방위원회	X	X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09.	O	X	O	안전보건협의체	X	X

○ 노동안전보건 전문기관 현황

- 노동자의 재해 진료 및 치료, 재해 예방대책 운영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전문기관의 개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 분과인 직업환경의학(구 산업의학)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전라북도 내 직업환경의학과 운영 병원은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군산 동군산병원, 전주 열린병원, 정읍 정읍아산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등으로 총 16명(전국 596명)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주로 각 의료기관이 보건관리대행,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의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 재해노동자의 진료, 상담, 치료에는 제약이 있음. 또한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양성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부재함.
-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재해 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임. 전국 10개의 병원이 운영 중이나 전북에는 설치되지 않았음. 전라남도에는 순천병원, 광주광역시에는 광주병원이 운영되고 있음.
-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 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하여 상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안전보건공단의 위탁을 받아 전국 23개의 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사)직업건강협회가 위탁하여 전주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 중임. 다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없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가 이루어짐.
- 이상을 종합하면 전라북도 내에서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미흡하며 이러한 실정이 전라북도 노동안전보건 통계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김정우. (2017).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산업노동연구.

통계청. (202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2021). 모래성 위에 쌓은 산재 예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분석」(2016~2020)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2016~2020)